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을 위한 SKT의 5G·LTE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고

- SKT 가입자는 23일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11월 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11월 22일(수)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SKT는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였으며,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다.

※ 부가서비스도 5G·LTE 세대 구분 없이 가입 가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5G 서비스 이용약관	5G 스마트폰만 가입 가능	LTE 또는 5G 스마트폰만 가입 가능
LTE 서비스 이용약관	LTE 스마트폰만 가입 가능	LTE 또는 5G 스마트폰만 가입 가능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 4.9만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았으나, 더 저렴한 3.3만원(1.5GB), 4.3만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 가능

** (예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 가정 시 기존에는 6.9만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으나, 6.4만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하여 5천원 절감 가능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단말기 세대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며, SKT의 경우 LTE 단말 이용자는 2만원 미만의 LTE·5G 요금제, 5G 단말 이용자는 4.2만원 미만의 LTE·5G 요금제로 변경 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차액정산금 발생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순 (044-202-6650)
		담당자	사무관	위재승 (044-202-6655)